

## "소방법 시행령 개정 골자"

80. 1. 4 소방법이 개정된 이어 지난 4. 15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때로 꼬 풍토를 예정이다.  
개정령은 점검장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범호 18항 나 지하가 주거
  2. 인명구조장구 비치 추가(방열문, 안소화풀기 등)
  3. 육내소화전 설치기준 강화(사업장이 종전의 1,000평 반미터에서 700평 반미터)
  4.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비상전원, 해도간 거리 등)
  5. 변전실, 발전실, 조일리실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는 물분분통·3층 소화설비 설치
  6. 사용화재 속도설비 완화
  7. 불연성 및 종발성 액체 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 홀로진화물, 분말 소화설비로 용이 변경
  8. 복수장소의 방염처리 완화(학교, 아파트, 여관 등)
  9. 연결설수설비 설치대상 중 지하층 또는 지하가로 연면적 700m<sup>2</sup> 이상으로 현경 및 실설
  10. 피난기구(18층 이상 제외) 등으로 기타 자세한 것은 이미 각부에 송부한 시행령 개정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 중 특히 문제점이 될만한 사항은 "제30조(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1항 다음 각호에 ... (13층 이상의 층 ... ) ... 하여야 한다.  
다만 12층 이상의 건축물을 옥상에 헌리클터 이착륙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여기에서 옥상에 헌리클터 시설이 없는 17층 이하의 고층건물에 피난기구(구조대, 원강기)를 설치하였을 때 과연 우사시에 이를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하겠다.